



#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 제 목 정부 「교육 서비스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교육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서비스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1. 개정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 서비스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지침 변경 알림」 (기업금융과-1314, 2020.10.22.)

### 2. 개정내용 : 상세 내용 [붙임] 참고

- 보증대상의 휴원증명서 발급 요건 삭제

구분	개정前	개정後
보증대상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u>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별도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은</u> 소기업·소상공인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3. 시행일 : 2020. 10. 23.

### 4. 기타사항

- 보증억제 관련 : 본 보증은 상품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증심사운용요령」 제10조의3 제2항제3호의 ‘정부의 지침에 의해 시행하는 특례보증’에 해당

- 붙임 1. 교육 서비스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前後대비표 1부  
 2. 교육 서비스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前전문 1부  
 3. 교육 서비스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개정後전문 1부. 끝.

